

2020 - 579

()
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58호(2004.2.25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48호(2005.12.30.)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·2지구 실시계획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8호(2020.04.1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, 제12조 및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제5조,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며,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24일
서울특별시장

□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

1. 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 없음)

- 명 칭 : 은평 재정비촉진지구
- 유 형 : 주거지형(시범 뉴타운지구)
- 위 치 :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
- 면 적 : 3,492,650.9㎡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(변경)

- 재정비촉진사업 : 도시개발사업 (수용 또는 사용방식)
- 시행기간
 - 당초 : 2004.02.25 ~ 2020.12.31
 - 변경 : 2004.02.25 ~ 2021.12.31
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 없음)

4. 재정비촉진계획(변경없음)

5. 지구별 주택 공급계획(변경 없음)

6. 주택용지 블록별 계획(변경 없음)

7.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8.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9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)

- 관련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(전화:02-2133-7217) 및 은평구청 도시계획과(전화:02-351-7403),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(전화:02-3410-7578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□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

1. 사업의 명칭(변경 없음) :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

2. 사업의 목적(변경 없음)

-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·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,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
-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
-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의 제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,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

3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 없음)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
- 면 적 : 3,492,650.9㎡

4.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
- 시행자 :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

5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(변경)

- 1지구 : 2004.02.25 ~ 2017.12.31
- 2지구
 - － 당초 : 2005.12.30 ~ 2020.12.31
 - － 변경 : 2005.12.30 ~ 2021.12.31
- 3지구
 - － 당초 : 2006.12.28 ~ 2020.12.31
 - － 변경 : 2006.12.28 ~ 2021.12.31

6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(변경 없음)

- 수용 및 사용방식

7.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(변경 없음)

8.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

- 공람기간 :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
-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(전화:02-2133-7217), 은평구청 도시계획과(전화: 02-351-7403) 및 서울주택도시공사(전화:02-3410-7578)
- 관계도서 : 공람장소 비치 도면과 같음

9.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·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: 해당 없음

10.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서 : 「붙임 1」

11.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

- 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 사항 이행할 것.